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6,000,000	14,580,000
일반회계	486,000,000	14,58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585,584천원으로 한다.
(일반예비비 4,800,000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,785,584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